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17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6. 2.

복지문화위원회  
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6. 2. 3.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복지정책과장)
- 제출일자: 2026. 1. 21.(수)
- 회부일자: 2026. 1. 22.(목)
- 검토기간: 2026. 1. 22.(목) ~ 1. 30.(금)

## 2. 제안이유

- 국가를 위해 헌신·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·예우하기 위해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대·지원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‘정의’ 규정의 각 호를 법령 조문으로 명시(안 제2조)
- 사망위로금 지급 금액 증액(안 제4조제2호)
  - (현행) 10만원 → (개정) 20만원
- 지급신청서 제출 기한 연장(안 제5조제2항)
  - (현행) 6개월 → (개정) 1년

## 4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‘10만원’에서 ‘20만원’으로 증액하고 신청기한을 ‘6개월’에서 ‘1년’으로 연장하며, 안 제2조에서는 참전유공자 ‘정의’를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그 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,
-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은 6.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 선양과 예우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등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, 다만 안 제4조의 ‘사망위로금’ 지급과 관련하여 ‘사망일 당시 주민등록 여부’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- 수정의견  
안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### 개정안·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지원사업)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1. 삭 제 2. <u>사망위로금 10만원 지급</u>	제4조(지원사업)----- ----- ----- -----. 2. <u>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</u>

# 관계법령

## 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6·25전쟁”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.
2. “참전유공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6·25 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
  - 가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(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군인
  - 나. 「병역법」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
  - 다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
  - 라. 6·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  - 마.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·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
## 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1. 순국선열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
2. 애국지사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
3. 전몰군경(戰歿軍警)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
4. 전상군경(戰傷軍警)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(퇴역·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)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“상이등급”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  5. 순직군경(殉職軍警)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6. 공상군경(公傷軍警)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  7. 무공수훈자(武功受勳者): 무공훈장(武功勳章)을 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.
- 8 ~ 18(생략)

## □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참전유공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